

**【서산시의회위원회회조례중개정조례안】**

# 심 사 보 고 서

2003. 7. 1.

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3. 6. 25.
- 나. 제출자 : 성두현 의원외 5인
- 다. 회부일자 : 2003. 6. 26.
- 라. 심사기간 : 2003. 7. 1.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 : 박상무 의원)

### 가. 개정이유

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3년도 6월 5일자로 개정·공포됨에 따라 의회 위원회 소관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총무위원회 소관 중 “자치행정과”를 “총무과”로 하고, 종합민원과 다음에 “주민자치과”를 삼입하는 것임(안 제3조제2항제2호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, 주민자치과의 신설에 따른 소관 사항을

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

-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#### 5. 토론 및 소수의견

- 없었음

#### 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 55 호
의 결	2003. 6. 24.
년 월 일	(제 회)

##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성두현 의원외 5인
발의년월일	2003. 6. 24.

#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03. 6. 24.

발 의 자 : 성두현의원외 5인

## □ 개정이유

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3년도 6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총무위원회 소관 중 “자치행정과”를 “총무과”로하고, 종합민원과 다음에 “주민자치과”를 삽입하는 것임(제3조 제2항 제2호)

## □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50조, 제54조
-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

##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제2호 중 “자치행정과”를 “총무과”로하고, 종합민원과 다음에 “주민자치과”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    1. (생략)</p> <p>    2. 총무위원회</p> <p>        기획감사담당관실 · 공보전산담당관실 ·  <u>자치행정과</u> · 세무과 · 회계과 · 문화광          과 · 종합민원과 · 사회복지과 · 지역경제          과 · 보건소 · 문화회관 · 시립도서관 · 문          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         사항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    1. (현행과 같음)</p> <p>    2. 총무위원회</p> <p>        기획감사담당관실 · 공보전산담당관실 ·  <u>총무과</u> · 세무과 · 회계과 · 문화광          과 · 종합민원과 · <u>주민자치과</u> · 사회복지          과 ·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</p>